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2. 19 김홍식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0. 3. 23
다. 상정·의결일자 : 2010. 3. 3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본 조례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군수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함.
- “편의시설”은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함,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함

나. 등산로 지정 관리대상 및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군수는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함.
-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함.

다.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위탁자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8조)

- 군수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라. 등산로 보호와 안전을 위한 휴식년제 실시(안 제9조)

-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음.

마. 등산로 및 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안 제10조)

- 누구든지 휴식년제를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0. 2. 19 ~ 3. 10.

- 집행부 의견조회 : 2010. 2. 19 ~ 3. 10. 의견 없음

나. 관계법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고성군 등산로 현황 :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성군의 책무, 등산로 지정관리, 편의시설 설치, 휴식년제, 금지사항 등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이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과정이나 고성군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10. 3.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